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788

발의연월일: 2023. 2. 2.

발 의 자:이주환·김용판·전봉민

이헌승 • 권명호 • 하영제

정우택 · 김승수 · 김학용

지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더불어 농촌사회에서도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나, 농촌의 현실은 양성평등의 실현과는 여 전히 동떨어져 있음.

그동안 여성농업인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주로 여성 관점에서 편향적으로 접근되었고, 농업노동, 가족생활, 마을과지역사회, 농업·농촌 정책 등 제반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 간 지위와부담의 격차에 대한 접근은 본격화되지 못하면서 현행법에는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또한 농업인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농촌사회에 존재하는 성별 격차 등으로 인하여 여성농업인 중 핵심 연령층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농업, 농촌의 재생산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이에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서 농업·농촌의 성별격차 해소 문제를

핵심과제로 채택하여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별격차 해소는 물론 농 촌사회의 재생산 위기 극복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7절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양성평등한 농촌사회의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농촌의 성별격차 해소를 통한 양성평등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 고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4조의2(양성평등한 농촌사회
	의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농업·농촌의 성별격차 해소
	를 통한 양성평등 증진에 필요
	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